서울특별시서초구2000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의안번호 제 57호)

○ 2000. 8. 28.

○ 운영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4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0. 8. 5

다. 상 정 일 자 : 2000. 8. 28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02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서 : 의회사무국장 김주년)

◉ 의회사무국 2000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1,932만4천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한 9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1,132만4천원

< 요구한 내용을 보면 >

▶ 사무국직원에 지급하는 특근급식비와 여비 4개월분 4백4십만원을 계상하여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

▶ 의원여러분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이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의정활동비에 4천3백2십만원, 회의수당에 2천8백8십만원을 계상

▶ 그리고,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국제회의등 참석에 대비하여 해외여비를 8백만원 계상

▶ 업원진 활동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지침이 변경 (서울시 행정13310-3192 ('99.12.22)호)되어 추가소요액 7백6십만원을 계상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환)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1) 일반회계

☐ 세입예산 : 해당없음

☐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세 출 합 계	1,311,324	1,219,324	92,000
1120 지방의회운영	1,311,324	1,219,324	92,000
1121 의사운영	885,900	881,500	4,400
100 경상적예산	883,000	878,600	4,400
120 경상적경비	441,756	437,356	4,400
201 여비	110,739	108,979	1,760
202 연금부담금등	31,008	28,368	2,640
1122 의정활동	425,424	337,824	87,600
100 경상예산	424,424	336,824	87,600
205 의회비	424,424	336,824	87,600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가 월 550천원으로 인상되어 200천원 증액 또한 1일 회의수당이 70천원으로 20천원 증액되어 총 72,000천원 증액 편성

ㅇ 서울시 행정 13310-1038호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국외도시방문경비 8,000천원 편성

ㅇ 서울시 행정 13310-3192호에 의거 의정단 활동비 기준액 인상에 따라 부족분 7,600천원 증액 편성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후 재정여건변화로 인한 세입조정과 결산이월금, 보조금등을 계상하기 위한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할 법정의무경비의 추가, 반환금, 재해대책경비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등 업무수행상 여건 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고,

□ 추경예산규모중 총 증액 규모는 33,979,779천원으로서,

ㅇ 세입은 지방세의 증가없이 세외수입인 경상적수입 832,229천원, 임시적세외수입 33,687,894천원인 순세계잉여금(일반 14,990,615천원, 주차장특별 13,751,442천원)과 잡수입 및 보조금 감액 540,344천원등으로 편성되었고,

ㅇ 세출은 경상예산 579,496천원, 사업예산 16,793,772천원, 예비비등 16,606,59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전망의 정확한 추계, 각종 체납 과태료등 세외수입의 세수노력증대, 불용액 발생가능 과목의 예산반영, 명시이월지도의 활용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기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 음.

6. 수 정 안 의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 음.